



춘 천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5구합84 관허사업정지처분 취소 등
원 고 A
피 고 ○○군수
변 론 종 결 2025. 11. 4.
판 결 선 고 2025. 11. 25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 피고가 2025. 2. 11. 원고에게 한 관허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하고,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

가. 피고는 2025. 2. 11. 원고가 3회 이상 지방세 총 4,612,860원을 체납하였으므로 2025. 3. 31.까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를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예고'라 한다).

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

성명 : 원고

영업종목 : 식품접객업(휴게음식점영업)(1~3종 이외)

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여 지방세징수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

(*총 체납건수 10건, 총 체납액 4,612,860원, 2025-02-11 현재)

정리보류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인해 체납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귀하께서 체납한 세금을 2025. 3. 31.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,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.

※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의 사유(재해, 도난, 질병, 상중, 사업손해 등)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검토가 필요하오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2025. 3. 31.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번호 기재)

납부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

*관허사업 : 허가, 인가, 면허, 등록, 신고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 인 제한,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

나. 원고는 2025. 3. 14. ○○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예고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, ○○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5. 4. 28.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호증,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

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,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이유제시도 하지 않았으며, 원고는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·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, 사실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예고는 체납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으로,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면서 처분을 예고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에 해당한다. 사정이 이와 같다면, 이 사건 예고는 그것만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·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12-01

재판장 판사 김○○

 판사 정○○

 판사 최○○